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11. 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0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10월 23일
- 다. 상 정 일 자 : 제6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10월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수만)

가. 개정이유

- 1) 물품구매시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구매요구토록 되어 있는 현행 절차를 소모품을 매입(수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모품의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 2) 물품구매 등의 납품시 검사(검수)에 대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미비로 규제 오해 소지가 있고 입회에 따른 검사(검수)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사업주관부서의 불만을 사고 있어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동조례 제9조의 제목“(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의 물품매입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제2항)
- 2)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시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한 것을 동 규정을 삭제하여 입회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 제2항)
- 3) 별표1의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중 비품 “단가 10만원”, 소모품 “단가 3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소액물품 구매시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의회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제4조의 비품의 취득단가를 현행 10만원 이상인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소모품의 기준단가는 현행 3만원 이하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하고 제9조의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하던 것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29조의 물품구매 등의 납품검사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함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
----------	----

제출년월일 : 1999. 10.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물품구매시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구매요구토록 되어 있는 현행 절차를 소모품을 매입(수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모품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 하고
- 물품구매 등의 납품시 검사(검수)에 대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미비로 규제 오해소지가 있고 입회에 따른 검사(검수)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사업주관부서의 불만을 사고 있어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동조례 제9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의 물품매입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분입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매입”할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제2항)
-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시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한 것을 동규정을 삭제하여 입회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 제2 항)
- 별표1의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중 비품 “단가 10만원”, 소모품 “단가 3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9조, 제27조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개정공포통보(회계43110-2685. 99.7.1)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개정조례안 : 별첨 안 참조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2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물품의 분류)의 별표1의 품종구분기준중 (1)비품 ②를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할지도 취득단가가 3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란(2)소모품④를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한다.

제9조의 “(관서당경비에 의한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매입(수리, 제조) 할 수 있다.

제27조의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행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를 “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1

현 행	개 정
<p>제9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 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매입상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에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입회의 생략 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공무원을 입회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항 (생략)</p>	<p>제9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매입(수리, 제조)할 수 있다. ③항 (삭제)</p> <p>제27조(검수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생략(현행과 같음)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검사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 (단서 조항 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 표 1>

물품의 품종, 상대구분	
현	개
행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분류 (1) 비품 (2) 소모품 ○ 품종구분기준 (1) 비품 ① 항 생략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의 물품 ③ 항 생략 (2) 소모품 ① ~ ③ 항 생략 ④ <u>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 되기 쉬운 물품</u> ○ 물품의 상대분류기준 (1) ~ (4)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기준 (1) 비품 ① 항 생략 ② <u>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30만원 이상의 물품</u> ③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① ~ ③ 항 현행과 같음 ④ <u>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 되기 쉬운 물품</u> ○ 물품의 상대 분류기준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11. 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0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10월 2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7회(임사회) 제1차 위원회(199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이종현)

- 가. 폐지이유
 - 건축법의 개정으로 영등포구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99.7.31) 됨에 따라 영등포구건축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본 안은 1993년 6월 영등포구 건축조례로 제정하여 5회에 거쳐 개정한 후 특별시(광역시) 산하의